

시설급여기관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(제22조제2항 관련)에 의해 2023년 계약의사 초진비용은 17,320원, 재진비용은 12,380원으로 변경됩니다.

변경된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(단위: 원)

진료	본인부담금 기준			
	일반(20%)	감경대상자 (12%)	감경/의료급여 (8%)	기초생활 수급자(0%)
초진(17,320)	3,460	2,070	1,380	0
재진(12,380)	2,470	1,480	990	0
초진비용 : 2022년(16,970) 대비 350원 인상 재진비용 : 2022년(12,130) 대비 250원 인상				

※ 계약의사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 초·재진찰료로 연도별 변동될 수 있음

효성노인건강센터